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영수필 표시에 관한 방법을 변경함

○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 또는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6조제5호)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6조제6호 신설)

○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 수수료 영수필 라벨 양식을 마련함(안 별지 제1호 양식 신설)

3.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　　호　　2023.　.　.결재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을 “지방법원”으로, “등기소(상업등기소를 제외한다)”를 “등기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을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으로, “법원주사보”를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간인”을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 또는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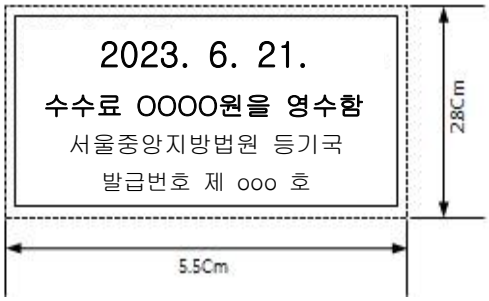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담당공무원) ① 사문서에 대한 일자확정청구사건은 지방법원(형사 및 가정법원은 제외한다), 지원, 등기소(상업등기소는 제외한다)에서 처리한다.	제2조(담당공무원) ① ---------- ---------- 지방법원 ---------- ---- 등기소----------.
② 제1항의 사건은 부동산등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이 이를 담당하되,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 ---------- ----------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
제6조(업무처리방식)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업무처리방식)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2. ---------- ---------- ---------- ----------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 ---------- ---------- ---------- ----------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기기(인증기)에 의하여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 취지를 표시하거나 영수필증을 첩부하고 별표 1과 같은 양식의 소인인을 조제하여 적색 또는 청색 스탬프를 사용하여 소인을 하여야 한다.	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 또는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법원공무원은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수수료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출력한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6